"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세요.
코로나19 예방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금도 드립니다."

Ⅰ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

□ **(사업목적)**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여 경직적·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 지원 유형 >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유연근무제 유형별 지원요건>

유형	지원 요건
시차출퇴근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활용 이전의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3. 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시차출퇴근제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4.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등에 규정할 것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재택·원격근무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단,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선택근무제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할 것 3.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것 * 정산기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시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4.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5.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6.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코로나로 개학연기된 우리아이 어떡하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세요."

II 가족돌봄비용 지원방안

□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 휴원·휴교·개학연기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 외벌이(5일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이내)

□ **(지원금액)**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전액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 근로자 직접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적용기간)**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종료일까지

Q 가족돌봄휴가란?

A 올해 1월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양육의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